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www.assi.or.kr](http://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mailto: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Tel 02-567-1307 / Fax 02-567-1337

문서번호 시험 2020 - 236호

시행일자 2020. 6. 3.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참 조 건축정책과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건축물 안전점검 인력기준 완화 반대의견 제출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중인 「건축물관리법」에 대하여 많은 건축사들이 1인이 운영하는 형식을 감안하여 점검기관 요건완화와 점검인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진단을 철저히 한 결과 현재까지 용역 부실로 인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시설물안전법」의 대상시설물이 아닌 중·소규모 건축물에서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용산상가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포항 지진 시에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4) 이렇듯이 중·소형 건축물일수록 설계·시공이 부실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점점 내구연한이 다가올수록 그 위험도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8년에 발생한 삼성동 오피스텔 기동균열 문제로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건축물 관리법」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유지관리 체계가 확립된 것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4. (1) 설계는 「건축법」을 기반으로 발주자의 구상을 계획을 세워 도면화하는 행위로 건축사의 본업은 기본적으로 설계와 감리업무입니다. 이에 비해 안전점검·진단은 현존하는 시설물의 상태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조사, 평가하고 안정성 해석을 통하여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2) 이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특급(건축사) 2인, 중급 3인, 초급 3인 등 8명으로서 설계용역업보다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주간의 전문교육과 매5년마다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성과품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평가를 하여 부실별점을 주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안전점검 부실로 인한 중대한 손괴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인명의 사상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도 무겁습니다.
  
5. (1) 우리는 삼성동 오피스텔 기동 균열에서 조사자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점검을 실시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 중·소규모 건축물은 설계도서 등 기준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안전점검·진단 시 전문가가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그 수행은 「시설물 안전법」상의 지침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3) 그리고 점검대상 물량이 많으면 등록기준에 맞는 인력을 확보한 역량 있는 점검기관이 더 많은 용역을 하면 되는 것이지 1인 기업에 맡기는 것은 부실을 통째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6. 따라서, 우리 협회는 「건축물 관리법」이 건축사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 보다 더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하며, 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 안전점검기관 등록과 인력기준 완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